

산삼연구소 규정

제 1조 (명칭 및 소재) 본연구소의 명칭은 호서대학교 산삼연구소(이하 '연구소'라 한다)라 칭하며, 호서대학교(이하 '대학교'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 2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산삼과 관련한 학문적 연구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사업) 본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.

1. 외부 연구과제의 수행
2. 연구관련 간행물의 발간
3. 관련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강연회
4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

제 4조 (조직)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소장 : 1 인
2. 연구센터장 : 1인
3. 연구원 : 약간 명
4. 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별도의 분야별 센터를 둘 수 있다.

제 5조 (임명) ① 연구소 소장은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연구센터장은 연구소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6조 (직무)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연구센터장은 관련부서의 운영과 연구관련 사항을 관장한다.

제 7조 (운영위원회)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① 운영위원회

1. 연구소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수립, 사업방향의 설정, 예·결산 및 사업계획, 기타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2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센터장, 학내 외 전문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8조 (재정)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, 용역비, 사업수익금,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

제 9조 (운영규정의 개정)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사항은 연구소 관리부의 장에게 보고한다.

제10조 (폐소)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 (신설 2015.09.01)

제11조 (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제12조 (준용)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(신설 2015.09.01)

제13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(신설 2015.09.01)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

제 2조 (시행세칙) 시행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